### [별표 14]

##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적용 절차

## 1.0 목적

규칙 제5.8.2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안정도 분석결과 불안정한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고장파급 방지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사업자와 업무협조 및 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개정 2006.9.14>

## 2.0 적용범위

- 2.1 적용대상: 전력거래소, 전기사업자
- 2.2 본 별표의 적용을 받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2.2.1 시스템의 방식 결정
- 2.2.2 시스템의 설치계획 수립
- 2.2.3 시스템의 설치 <개정 2006.11.29>
- 2.2.4 시스템의 시험 및 유지보수[신설 2006.11.29]

#### 3.0 책임

- 3.1 전력거래소<개정 2006.11.29>
- 3.1.1 본 별표의 운영에 적용할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정비한다.
- 3.1.2 정확한 안정도 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방식의 시스템 적용을 결정한다.
- 3.1.3 결정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최신자료를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방법을 선정한다.
- 3.2 전기사업자 <개정 2006.11.29> 전기사업자는 시스템의 설치, 시험 및 유지보수를 아래와 같이 담당한다.
- 3.2.1 발전기 차단 또는 출력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은 발전사업자
- 3.2.2 송전선로 또는 변압기를 차단(또는 투입)하는 시스템은 송전사업자
- 3.2.3 발전기 차단 또는 출력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이 송, 수신장치로 나누어져 설치될 경우 송신장치(통신설비 포함)는 송전사업자, 수신장치는 발전사업자

#### 4.0 참고자료

- 4.1 법, 시행령, 시행규칙
- 4.2 전기설비기술기준
- 4.3 보호계전기 설명서 : 제작사 발행

### 5.0 용어의 정의 [신설 2006.11.29]

- 5.1 고장파급방지시스템 계통분리, 발전기 탈락, 송전선로의 연쇄차단 등 광범위한 파급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컴퓨터, 통신전송설비, 보호장치 등 일련의 장치들의 조합 을 말한다.
- 5.2 준공시험 시스템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 전에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.
- 5.3 정기시험 사용 중인 시스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.
- 5.4 임시시험 사용 중인 시스템의 기능 또는 회로 변경이나, 오·부동작시 시행하는 시험 을 말한다.
- 5.5 일일점검 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1일 1회 이상 점검하 는 것을 말한다.

## 6.0 적용지침

해당 없음

#### 7.0 절차

- 7.1 전력계통 안정도 분석
- 7.1.1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설치장소 및 방식을 결정한다.
- 7.1.2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안정도 분석 결과를 전기사업자에게 제시한다.
- 7.2 시스템의 설치계획 수립
- 7.2.1 전력거래소는 7.1.1에서 결정한 시스템 방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성 기본계획서를 작성한다. <개정 2006.11.29>
- 7.2.2 시스템 구성 기본계획서에는 회로도, 주요부품의 동작속도, 정격사항, 구비조건 성능 및 환경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7.2.3 전력거래소는 기본계획서 작성후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, 현장여건 등 제 반 사항에 관해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최종 계획서를 확정하고 전기사업 자에게 시스템 설치를 문서로 요청한다.
- 7.2.4 전기사업자는 자체 검토결과 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력거 래소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- 7.3 설치 <절명칭변경 2006.11.29>
- 7.3.1 전기사업자는 시스템 설치요청을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품조달 지연, 발전기 정지 또는 출력출력 감소계획 조정 등으로 준공지연이 예상될 경우 전력거래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. <변경 2006.11.29>
- 7.3.2 전기사업자는 시스템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전력거래소와 협의한다.
- 7.4 시스템의 개선 <절명칭변경 2006.11.29>
- 7.4.1 전력거래소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 통보한다. <변경 2006.11.29>
- 7.4.2 전기사업자는 본 별표 7.4.1항에서 통보 받은 개선대책을 시행한다. 다만, 부품조달지연, 발전기 정지 또는 출력감소계획 조정 등으로 개선지연이 예상될 경우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. <변경 2006.11.29>
- 7.5 준공시험 [신설 2006.11.29]
- 7.5.1 전기사업자는 시스템을 설치한 후 시스템 사용개시 전에 준공시험을 시행하다.
- 7.5.2 준공시험은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현장 여건상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.
  - 1. 시스템 자체의 기능 확인 시험
  - 2. 입출력회로(AC, DC Sequence) 시험
  - 3. 시스템과 다른 장치간의 interface 관계 시험
  - 4. 통신관련 시험
  - 5. 종합 연동시험
- 7.5.3 전기사업자는 시험완료 후 즉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에 통보하고 4주 이내에 시험성적서 및 관련도면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.
- 7.5.4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당초계 획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7.6 정기시험[신설 2006.11.29]
- 7.6.1 정기시험 주기는 2년에 1회로 한다.
- 7.6.2 정기시험의 범위는 7.5.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.
- 7.6.3 전기사업자는 시험완료 후 즉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에 통보하고, 4주 이내에 시험성적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.
- 7.7 임시시험 [신설 2006.11.29]

- 7.7.1 시스템의 기능 또는 회로 변경, 오·부동작 등이 발생한 경우 기능이나 회로변경 내용 확인 및 오·부동작 원인규명을 위해 임시시험을 시행한다. 단, 단순한 단자분리, 단자간 jumper 등 육안 점검만으로도 기능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.
- 7.7.2 임시시험의 범위는 시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행한다.
- 7.7.3 전기사업자는 시험완료 후 즉시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에 통보하고, 4주 이내에 시험성적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한다.
- 7.8 일일점검 [신설 2006.11.29]
- 7.8.1 일일점검은 1일 1회 시행한다. 단, 원격상태 감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일일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
- 7.8.2 일일점검은 주로 시스템의 정상운전여부와 외부적인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운전중인 시스템의 정상운전상태 여부
  - 2. 각종 스위치 상태 정상여부
  - 3. DC 전원의 정상여부
  - 4. 통신을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통신 송수신 상태 정상여부
  - 5. 기타 외관상 이상유무 점검
- 7.9 시스템 운전 [신설 2006.11.29]
- 7.9.1 시스템 운전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의 급전지시에 따라 시행한다.
- 7.9.2 2계열로 시스템이 구성된 경우 상시는 2계열로 운전하고 시험 또는 유지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1계열로 운전할 수 있다.
- 8.0 시스템 요구 조건 [신설 2006.11.29]
- 8.1 시스템의 구성
- 8.1.1 본 규칙 별표3의 3.4항, 3.5항 대책을 위한 시스템이 부동작 할 경우발전 기 동기탈조, 대규모 공급지장, 전압불안정 등 광역계통으로 파급이 우려 되므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2계열로 구성한다. 다만, 현장설비 여건, 시공상의 문제, 단기간 비상시만 운전하는 시스템 등으로 불가 피한 경우에는 1계열로 구성할 수 있다.
  - 1. 발전기 과도안정도 대책을 위한 시스템
  - 2. 345kV 이상 계통전압 불안정 대책을 위한 시스템
- 8.1.2 제주계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54kV 계통 안정화 대책을 위한 시스템은 2계열화 한다. 다만, 단기간 비상시만 운전하는 시스템 등 불가피한경우에는 1계열로 구성할 수 있다.
- 8.1.3 기타 시스템 구성상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계열화 한다.

- 8.1.4 시스템의 입력요소(CT, PT, 계전기 접점, 차단기접점 등)는 원칙적으로 계열별로 분리한다. 다만, 현장설비 여건,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동일 입력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.
- 8.2 통신장치 및 전송로
- 8.2.1 시스템 전용의 통신장치 및 전송로를 구비한다.
- 8.2.2 시스템이 2계열인 경우 각 계열별로통신장치 및 전송로를 구비한다.
- 8.3 통신상태 감시 통신상태의 정상여부를 상시 감시하여 통신 이상시 운전원에게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한다.
- 8.4 현장 운전정보의 제공 [신설 2008.10.31]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운전상태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의 EMS로 전송하는 기능을 구비한다.
- 8.4.1 대상개소 : 발변전소에 설치된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중 해당 장치의 운전 상태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력거래소가 요청하는 개소
- 8.4.2 대상정보 : 규칙 별표13의 붙임8.1의 8.1.3항에 따른다.
- 9.0 붙임 <번호변경 2006.11.29>
- 9.1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적용 업무 흐름도

# 고장파급방지시스템 적용 업무 흐름도

